

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(제21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소방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소방장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 이상

		위반	위반	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다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라. 실수·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5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바.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6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사.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4조제6항제7호	지정취소		